여럿이 한데 모임 : 합

『합(合)』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합에프앤비(합F&B)'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합에프앤비(합F&B)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등록일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3073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05-2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1-16

『합(合)』 가맹사업본부 주식회사 합에프앤비(합F&B)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15, 102~103호(금곡동)		
전화번호	031-360-0918	**팩스번호**	-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담당자 전화번호**	031-360-0918
홈페이지	www.합.net	**담당자 이메일**	junsoo7507@naver.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첨 서류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주식회사 합에프앤비 (합F&B)	영업표지	합(合)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15, 102~103호(금곡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이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11.07.	2022.11.19.	박준수	031-360-0918	-
법인등록번호	135811-0456153	사업자등록번호	663-86-0277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박준수 / ㈜합에프앤비 (합F&B)	합(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15, 102~103호(금곡동)		
			대표이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준수	031-360-0918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양우진 / ㈜합에프앤비 (합F&B)	합(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15, 102~103호(금곡동)		
			대표이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준수	031-360-0918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오종민 / ㈜합에프앤비 (합F&B)	합(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15, 102~103호(금곡동)		
			대표이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준수	031-360-0918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최근 3년 동안 당사가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합(合)	합(合)	2022.11.0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15, 102~103호(금곡동)	박준수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추가 설명</th></tr>
<tr><td>명 칭</td><td>『합(合)』</td><td>-</td></tr>
<tr><td>상 호</td><td>『합(合)』 _____ _____점</td><td>-</td></tr>
<tr><td>상표(서비스표)</td><td>
여럿이 한데 모임 : 합</td><td>출원

40-2021-0252673
(2021.12.13.)</td></tr>
<tr><td rowspan="3">그 밖의 영업표지</td><td> </td><td> </td><td rowspan="3">BI, CI, 간판 등</td></tr>
<tr><td>
합 · 여럿이 한데 모임
수육튀김 & 전</td><td>
여럿이 한데 모임
여럿을 한데 모음</td></tr>
<tr><td colspan="2">
여럿이 한데 모임
여럿을 한데 모음</td></tr>
</table>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	-	-
2022년	309,252	297,080	12,172	148,017	2,438	2,172
2023년	537,035	501,648	35,386	2,240,246	23,288	23,214

☞ 근거는 별첨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입니다.

※ 당사는 2022년 11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법인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0년	-	-	-	-	-	-
2021년	-	-	-	68,256	-	-
2022년	-	-	-	529,483	-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위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 임원의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박준수	대표이사	2022.11.19. ~ 현재	주식회사 합에프앤비(합F&B) 대표이사	가맹본부 운영 총괄
		2021.08.03. ~ 현재	합(含) 호매실점 대표	매장 운영 총괄
양우진	사내이사	2022.11.19. ~ 현재	주식회사 합에프앤비(합F&B) 사내이사	가맹본부 운영 실무
오종민	감사	2022.11.19. ~ 현재	주식회사 합에프앤비(합F&B) 감사	회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임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상근	비상근	계
2023년 12월 31일	2	1	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상표(서비스표)	권리 내용	출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 등록번호	출원인 / 권리인	존속 기간 만료일
合 여럿이 한데 모임 : 합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출원 2021.12.13. 등록 2023.08.25.	출원 40-2021-0252673 등록 40-2072882	박준수	2033.08.25.

☞ 당사는 상기 상표의 권리인이자 당사의 대표이사인 '박준수'으로부터 본 상표의 사용허락을 득하였습니다.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합(合)』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3년 6월 19일(1호점 계약체결일)
(직영점 오픈일 : 2021년 8월 3일)

☞ 당사는 2022년 11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상기 직영점 시작일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의 가맹본부 대표자(현 대표이사) 명의로 운영되던 직영점의 오픈일로 현재 가맹본부에서 해당 매장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합(合)』 연혁

☞『합(合)』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합(合)	합(合)	박준수	2023년 6월 19일 ~ 현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15, 102, 103호 (금곡동, 커낼파크1층)
주식회사 합에프앤비(합F&B)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15, 102~103호(금곡동)

3.『합(合)』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합(合)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주점	한식주점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합(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3	-	3	8	4	4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1	1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	1	3	-	3	7	3	4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 간『합(合)』가맹점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증감
2021년	-	-	-	-	-	-	-
2022년	-	-	-	-	-	-	-
2023년	-	4	-	-	-	4	+4

6.『합(合)』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개/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비고
		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전체	4	기재 생략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2023년 12월 기준 당사의 가맹점은 4곳이나, 이 중 2023년 7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이 3곳(수원 인계점, 망포점, 수원역점)으로 1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합(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4곳	16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내역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경기도	(비공개)	20,538	경기도 (비공개)	-	경기도 (비공개)
판촉	-		-	-	-	
합계	-	-	20,538	경기도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합에프앤비(합F&B)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 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 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보험금액	예치금액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보험회사 조사 →지급 여부 결정 →보험금 지급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 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합(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귀하와 협의한 별도 구입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8,800**	-	-	-	**(반환 조건)**
가맹비	5,500	계약 시 예치	반환 안됨	가맹계약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개점 전 교육비	3,300	계약 시 예치	반환 안됨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 미 이수시 반환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 조건
합계	**3,000**	-	-	-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 종료 시 정산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합계	**11,800**	부가세 포함
가맹비	5,5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3,3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	부가세 없음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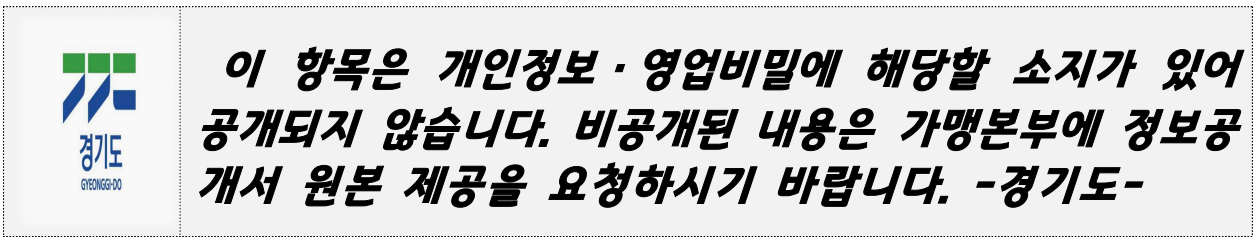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합계	-	78,650	**3,933**	-	**66㎡(약 20평)기준**
인테리어	(요청 시) 가맹본부	37,400	1,870	시공 시작 10일 전	시세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간판 및 실내사인물	(요청 시) 가맹본부	6,600	-	설치 10일 전	
설비 및 기기	가맹본부	16,500	825	설치 10일 전	
집기 및 비품	가맹본부	11,550	577	입고 10일 전	
POS	***협력업체***	임대	-	설치 10일 전	
테이블오더	가맹본부 지정업체		-	설치 10일 전	
의탁자 등	가맹본부	6,600	-	설치 10일 전	(업체 선정중)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관리 감독 준수 : 인테리어, 간판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자체 시공하는 경우 당사는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고, 당사의 감리 대가로 평당 **금삼십삼만원 (₩330,000 / VAT 포함)**을 공사 착수 전일까지 당사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2) 필수 구입 내역 : 초도물품 일체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그 밖의 포스기, 오더(***협력업체***), 냉/난방기, 철거, 전기증설, 도시가스 인입 및 배관공사, 파사드 및 외

부추가공사, 덕트, 화장실, 각종 인허가 비용, 샹들리에, 프로젝터빔 등 기타 공사 및 견적외 품목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 금액은 오픈하고자 하는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정확한 금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가맹희망자가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입지선정 지연에 따른 오픈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가맹점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가맹금 등 분납 제도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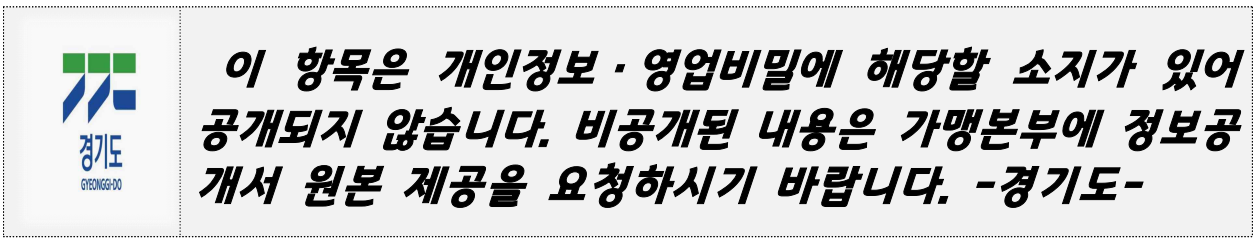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가맹본부	월 ₩660,000원 / 월 매출액의 2.2% 중 높은 금액	익월 5일	반환 불가	로열티로 비용 소요	영업지역 보장 및 상표사용료 등
물품대금	가맹본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한 물품 대금	주문 시 선결제	물품에 하자 발생 시	가맹계약서 제20조 참조	
POS사용료	협력업체	월 ₩55,000	지정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름			-
테이블오더	가맹본부 지정업체	1대당 ₩38,500				업체 선정 중
광고·판촉	가맹본부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8. 광고 및 판촉활동 참고	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반환 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	-	-	경우에 따라 실비 지급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가 요구 시 : Ⅶ.1 외 비용 부담	-	-	-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	-	금전 지급 기일 경과 시

			날까지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2023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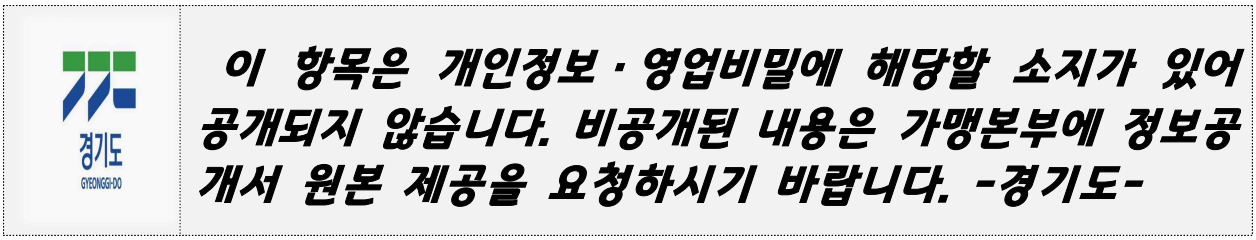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감독항목	내용	시기	비고
상품 및 재고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및 재고상품의 보관상태 등 점검	분기별	문의 : 가맹사업팀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각종 설비관리 상태 점검		
접객 및 교육상태	가맹점사업자의 각종 설비관리 상태 점검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회계조사	수시	
기 타	종업원 코칭 상담, 마케팅 및 서비스 운영 체계 컨설팅, 가맹본부 직급교육 실행 및 공동 매뉴얼 운영 관리	수시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 및 경영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운영하는『합(合)』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초래된 **최초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 · 비품 · 집기 및 당사의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등)등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 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철거 ·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 ·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 · 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 ·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며, 그로부터 14일 이내 전 항에 의하여 정산되고 되고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인 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름 / 상호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해당없음	-	-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1)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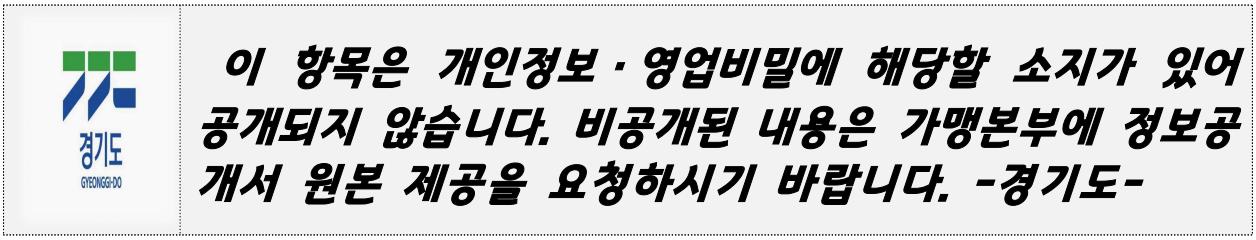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 해당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판매상품명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 · 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판매상품·용역명	권장가격	판매상품·용역명	권장가격
수육튀김 500g	21,900	수육튀김 900g	33,900
마늘폭탄꼬들목	16,900	청양듬뿍무뼈닭발	17,900
묵은지어묵전골	15,900	꼬치어묵탕	15,900
명란알칼국수	18,900	DIY 아이스크림	8,000
새우튀김&멘보샤	11,900	합튀스크림	11,900
닭껍질교자&칩스	11,900	핫윙&칩스	12,900
모둠감자튀김	9,000	하이볼(위스키)얼그레이	6,900
우유튀김&치즈볼	6,000	이달의 하이볼 / 시그니쳐 하이볼	5,900
하이볼(보드카)	6,900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합(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	합(合)	-

☞ 귀하의 영업지역에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사의 [합(合)]과 동일한 업종의 브랜드를 추가 입점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및 방법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재조정(변경) 가능 여부
ㅇ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가맹계약서 별첨 내 표기된 지역을 기준으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ㅇ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점포로부터 반경 500M로 한다.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가맹점 사업자 동의 시

ㅇ 대규모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및 유통집객시설의 경우 별도 기준의 영업지역이 부여된다.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가맹계약 갱신 시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변경)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점 간 영업지역 침범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적으로 권고하며, 당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사업자로부터의 제재요청이 있거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가맹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가맹본부 및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으로부터 영업방해 등 영업손실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조치와 계약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유	위반시 책임		예외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영업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전단지배포, 배달어플 광고 포함)	1차	1차 서면 시정요구	해당 지역 가맹점의 허락을 얻었거나 상호 합의하여 당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2차	2차 서면 시정요구	
	3차	공급중단 등 계약상 제재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

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없음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51.7%	48.3%	-	-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	-

☞ 당사는 직/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동일하며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합(合)』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1]년**입니다.

2)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4조 3항)
1. '을'이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2. '을'이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3. '을'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7.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8. '갑' 또는 '을'이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사가 정하는 물류공급 중단 사유(가맹계약서 제22조 1항)

7일 전 서면 예고 후 미 시정 시 물품공급 중단 사유
1.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

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3. '을'이 제3조 제1항(가맹점의 표시)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4.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5.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실시하는 필수 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6. '을'이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을'이 경업을 하거나 '을'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8. '을'이 물품대금, 로열티, 광고·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을'의 채무가 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9. '을'이 **제32조**에 따른 회계자료(매출액 현황을 포함)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2회 이상 허위 · 지연 통지하는 경우
10. '을'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을'이 '갑'의 품질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11. '을'이 노후 된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2. '을'이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상품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을'이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15.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을'이 '갑'의 각종 매뉴얼 기준에 따른 관리 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7.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9.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 '을'이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하여 '갑'이 권고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1.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 34조 4항)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환매	불가능	-	환매제도 운영 안함
양도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	-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귀하는 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 [합(合)]과 동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합(合)] 매장과 동일한 업종(주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년 간 하기 행위를 하는 경우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비롯한 민 · 형사상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o 기존 점포와 동일한 위치에서 동종 업종의 다시 영위하는 행위 o 동종 업종의 가맹본부를 설립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행위	

8.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권장 영업일수	비고
평일 17:00~(익일)01:00 금토 16:00~(익일)02:00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후 결정)	주 6일 이상	연속하여 5일 이상 무단 휴업 불가 (가맹점 상권에 따라 협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를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또한, 귀하의 직접 매장 운영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3인	직접 근무(협의)	82.5㎡(약 25평) 기준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당사의 정책 준수 여부, 당사가 정한 상품 취급 여부, 당사가 정한 필수공급품목 취급 여부, 원부재료 품질기준 준수 여부, 매장 위생 및 청결 상태, 각종 설비 관리 상태, 기타 가맹점 매뉴얼 규정 등 가맹점 운영 현황 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 또는 유무선 연락→관리내역 점검→상담일지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서명 또는 통지→완료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월 1회 이상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20%	총 광고비의 8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단, 가맹점 200개 이상 및 광고비 3억원 이상일 경우 -본사부담: 10%, -가맹점 수 균등분담: 90%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30%	총 광고비의 70%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총 광고비의 0%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판촉 전체 행사	할인행사	총 판촉비의 20%	총 판촉비의 8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20%	증정상품 출하가 80%	〃	〃
	팜플렛 등	판촉물 제작비용	판촉물 제작비용	〃	〃

	제작	20%	80%		
	기타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해당 없음		〃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가 정하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위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서 당사의 시스템, 매뉴얼, 제조, 판매, 영업, 계약 및 점포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인지할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법이나 노하우 및 이들이 수록된 운영교범 기타 자료를 포함합니다.

3.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오픈 전 당사의 귀책없이 귀하가 일방적으로 본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위약벌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요청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	최초예치가맹금의 30%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후 5일 이내	최초예치가맹금의 50%
계약 체결 후 가맹점 오픈 이전	최초예치가맹금의 90%

2. '을'이 **가맹계약서 제19조**(자점매입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1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을'이 **가맹계약서 제21조**(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를 위반하여 '갑'이 지정하거나 공급하는 상품만을 판매하지 않았거나 '을'의 임의로 판매품목을 변경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

(₩30,000,000원)을 1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을'이 **가맹계약서 제34조**(계약의 해지)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다른 영업표지의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1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5. '을'이 본 계약기간 만료일 전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혜택 또는 면제된 비용 등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의 귀책으로 계약이 즉시해지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24,000,000 / 720) X 잔여기간(일)

6. '을'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29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을'은 '갑'에게 금일억원(₩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을'이 계약의 종료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매장면적(㎡) X 지체일수 X ₩20,000]으로 산출한 금액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갑'은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갑이 '을'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당사 전체 시공 시**	**약 50일 내외**	**Ⅳ.가맹점사업자의 부담 4) 번 항목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5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제공	D-4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36~48(13일)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35(1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D-34(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등 시공비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32~33(2일)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D-2~31(30일)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D-1(1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가맹사업법」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 · 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서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가맹본부 /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신정이 없더라도 가맹본부 부담액을 점포 환경개선이 끝난 날 부터 9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비용부담 제외사유	ㅇ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부담	문의: 지원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지원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과 창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정책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지원 기간	지원 내용	비 고
-	해당 없음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점 전 교육 (신규 교육)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 실시, 운영 중 문제 발생 시 수시교육 권고 * 양수도 시 양수인 교육도 상동	이론 및 실습교육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개점 후 교육 (보수 교육)	가맹점 운영 정책 변경, 영업활성화, 고객서비스 개선, 가맹점 의견수렴(요청)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신규 교육)	2주	3,300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 실시, 운영 중 문제 발생 시 수시교육 권고
개점 후 교육 (보수 교육)	추후 공지	당사 부담(예외 있음)	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매장명	소재지
1	경기	호매실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15, 102~103호(금곡동)
2	경기	아주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3번길 24, 2층(원천동)
3	경기	성대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05번길 26-4, 2층(율전동)
4	경기	기흥구청점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1 2층 합
5	-	-	-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약 15개월	매장 최초 오픈일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당사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입니다.

※ 당사는 2022년 11월 7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으며, 본점 외 직영점 2곳의 경우 2022년 11월 7일 자를 기준으로 당사의 종된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506,187(천원)	당사의 직영점 4곳 중 6개월 미만 운영한 1개점(기흥구청점)을 제외한 3곳의 평균 매출액임을 밝힙니다.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당사는 2022년 11월 7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으며, 본점 외 직영점 3곳의 경우 2022년 11월 7일 자를 기준으로 당사의 종된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기 평균 매출액은 매장의 최초 오픈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매출액입니다.

[별지 1] 2023-2022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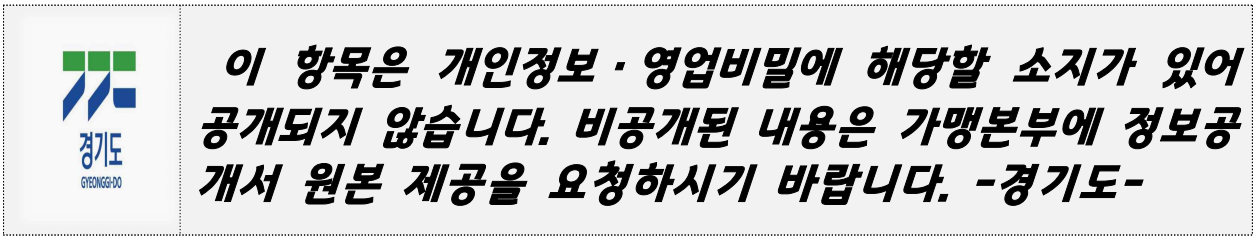

- 양수도 이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금 예치 신청서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 예금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

신청인은 귀사의 브랜드인 _____ 가맹계약을 체결을 희망하여,
_____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을 신청합니다.

가맹점명(가칭) :	**가맹본부용**

제공 일자 : 20___년 ___월 ___일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___년 ___월 ___일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 성 명 :

2) 생년 월일 :

3) 자택 주소 :

4) 전화 번호 :

2. 신청인의 현재 직업 :

3. 투자 자금 :

4. 개설 희망 지역

1)	시(도)	구(군)	동(면)	지역
2)	시(도)	구(군)	동(면)	지역

5. 수령 방법 : ① 서면교부 ( ) ② CD-ROM ( ) ③ E-mail 등 전자양식 ( )

6. 제공 담당자 : _____(인)

7. 비밀유지 서약서

위 신청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기재된 사항은 모두가 진실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이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___년 ____월 ____일

신청 및 수령인 _____(인)

_____ 가맹본부 귀중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

신청인은 귀사의 브랜드인 _____ 가맹계약을 체결을 희망하여,
_____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을 신청합니다.

가맹점명(가칭) :	**가맹점사업자용**

제공 일자 : 20___년 ___월 ___일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___년 ___월 ___일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 성 명 :

2) 생년 월일 :

3) 자택 주소 :

4) 전화 번호 :

2. 신청인의 현재 직업 :

3. 투자 자금 :

4. 개설 희망 지역

1)	시(도)	구(군)	동(면)	지역
2)	시(도)	구(군)	동(면)	지역

5. 수령 방법 : ① 서면교부 ( ) ② CD-ROM ( ) ③ E-mail 등 전자양식 ( )

6. 제공 담당자 : _____(인)

7. 비밀유지 서약서

위 신청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기재된 사항은 모두가 진실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이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___년 ____월 ____일

신청 및 수령인 _____ (인)

_____ 가맹본부 귀중